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8. 5. 22.

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가. 발의일자 : 2008년 5월 14 일

나. 발 의 자 : 윤준용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5월 19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3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(2008. 5. 21)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: 윤준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·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 및 성숙된 사회봉사 활동 전개를 장려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수여,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에 대한 위문 격려(안 제2조)
- 새마을사업, 한마음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,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지원(안 제3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김 병 욱)

-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상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종로구에서 제169회 제2차 본회의(2006.11. 3)에서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으나 구청의 재의요구로 현재 유보되어 있습니다.
- 본 조례안과 같이 특정단체 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경우 사회단체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 운영 취지에 벗어나 건전재정 운영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은 물론 바르게살기, 자유총연맹 등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에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

4. 修正案 要旨

가. 수정이유

-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불필요한 중복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내용에 포괄적 범위를 부여하고자 하며, 또한 자구정정을 하기 위하여 수정함.

나. 수정골자

- 제3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, 제2호 “한마음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”를 “행사”로 하며, 제3호를 삭제 하고, 제4호를 제3호로, 제5호를 제4호로, 제6호는 제1호로 한다.
- 제5조 제1항 중 “제4조 제1항”을 “제3조 각호”로 한다.

5. 審査結課 : 修正案可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번호	144
----------	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8.5.21

제 출 자 : 고기판 위원

1. 수정이유

-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불필요한 중복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내용에 포괄적 범위를 부여하고자 하며, 또한 자구정정을 하기 위하여 수정함.

2. 주요골자

- 제3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, 제2호 “한마음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”를 “행사”로 하며, 제3호를 삭제 하고, 제4호를 제3호로, 제5호를 제4호로, 제6호는 제1호로 한다.
- 제5조 제1항 중 “제4조 제1항”을 “제3조 각호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제3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, 제2호 “한마음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”를 “행사”로 하며, 제3호를 삭제 하고, 제4호를 제3호로, 제5호를 제4호로, 제6호는 제1호로 한다.
- 제5조 제1항 중 “제4조 제1항”을 “제3조 각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예산지원) (생략)</p> <p>1. 새마을사업</p> <p>2.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<u>한마음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</u></p> <p>3. 퇴임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(생략)</p>	<p>제3조(예산지원)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(삭 제)</p> <p>1. (현행 6호와 같음)</p> <p>2행사</p> <p>(삭 제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 제)</p>
<p>제5조(지원신청 및 보고)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지원신청 및 보고)①제3조 각 호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번호	144
----------	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8. 5.

제 출 자 : 고기판 위원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
같이 수정한다

- 제3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, 제2호 “한마음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”를 “행사”로 하며, 제3호를 삭제 하고, 제4호를 제3호로, 제5호를 제4호로, 제6호는 제1호로 한다.
- 제5조 제1항 중 “제4조 제1항”을 “제3조 각호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·새마을부녀회·새마을문고(이하 “새마을지도자”라 한다)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구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예우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
2.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
3. 기타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 (예산지원)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2.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행사
3. 선진지 견학 및 연수지원
4.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

제4조 (새마을기 계양) 구청, 각 주민센터, 기타 구청 산하공공기관에는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계양할 수 있다.

제5조 (지원신청 및 보고) ①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예산지원) (생략)	제3조(예산지원) (제정안과 같음)
1. 새마을사업	(삭 제) 1.(현행 6호와 같음)
2.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<u>한마음 수</u>	2 행사
<u>련대회 및 체육대회</u>	
3. 퇴임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에 대	(삭 제)
<u>한 표창 및 간담회</u>	
4.(생략)	3.(현행과 같음)
5.(생략)	4.(현행과 같음)
6.(생략)	(삭 제)
제5조(지원신청 및 보고)①제4조제1항	제5조(지원신청 및 보고)①제3조 각 호.....
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
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
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44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8. 5.

발의의원 : 윤준용의원

1. 제안이유

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·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사기 진작은 물론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 및 성숙된 사회봉사 활동 전개를 장려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예우(안 제2조)

-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수여,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에 대한 위문 격려 등

나. 예산지원(안 제3조)

- 새마을사업, 한마음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, 선진지 견학 및 연수지원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, 같은 법 시행령 3조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

다. 기 타 :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·새마을부녀회·새마을문고(이하 “새마을지도자”라 한다)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구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예우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
2.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
3. 기타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 (예산지원)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새마을사업
2.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및 체육대회
3. 퇴임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
4. 선진지 견학 및 연수지원
5.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
6.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4조 (새마을기 계양) 구청, 각 주민센터, 기타 구청 산하공공기

관에는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.

제5조 (지원신청 및 보고)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